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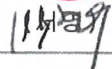


구분		
열람·서명자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위원	성명 박정민 (서명)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위원	성명 박준우 
확인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성명 주용학
작성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6급	성명 지종대

2023년 제14차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회의록

2023. 10.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회의록

〈 회의개요 〉

- ◆ 일 시: 2023. 10. 13.(금) 16:30~17:30
- ◆ 장 소: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실
- ◆ 참석위원: 6명(주용학, 김민곤, 이승은, 이현수, 박정민, 박준우)
 - 불참: 1명(김정아)
- ◆ 진행순서
 - 성원 보고, 개회, 제척·회피·기피 관련 규정 안내, 안건 상정 및 심의·의결, 폐회
- ◆ 상정안건: 3건(청원처리 3)
 1. 제2023-38호, 「임산부 배려석에 규제 도입」 청원의 조사 결과에 대한 청원처리 사항
 2. 제2023-39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개정」 청원의 조사 결과에 대한 청원처리 사항
 3. 제2023-40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 정상화」 청원의 조사 결과에 대한 청원처리 사항
- ◆ 회의결과: 원안가결 2건, 조건부가결 1건
 1. 제2023-38호: 원안가결(처리부서의 검토의견에 동의하며 원안동의)
 2. 제2023-39호: 원안가결(처리부서의 검토의견에 동의하며 원안동의, 다만, 검토의견 중 경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의견 제시)
 3. 제2023-40호: 조건부가결(청원인의 청원 취지에 맞춰 검토 의견을 전체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으로 조건부동의)

제척·회피·기피 관련 규정 안내

① 제척(「청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청원심의회 위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전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회피(「청원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제4항)

- 청원심의회 위원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청원심의회 위원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청원기관의 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기피(「청원법 시행령」 제4조제2항)

- 청원심의회 심의 대상 안전의 당사자는 청원심의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청원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주요 발언 내용

[개최]

○ 000 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제14차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회의를 개최함.

(의사봉 3타)

[제척·회피 확인] 위원 등을 대상으로 제척·회피·기피 관련 규정을 안내하였으며, 제척·회피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없음을 확인함.

[안건 처리]

1. 의안번호 제2023-38호, 「임산부 배려석에 규제 도입」 청원 의 조사 결과에 대한 청원처리 사항

< 안건상정 >

【 청원 처리부서 직원 입장: 버스정책과 000 0000000000,
000 000, 도시철도과 000 000, 서울교통공사 000 00,
000 00 】

○ 000 위원장

[기피 확인] 처리부서 직원이 기피하는 위원이 없음을 확인함.

- “의안번호 제2023-38호, 「임산부 배려석에 규제 도입」 청원의 조사 결과에 대한 청원처리 사항의 건” 을 상정함.

(의사봉 3타)

- 처리부서 직원은 청원서 내용과 청원 조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설명: 버스정책과 000 0000000000 】

< 질의 답변 >

○ 000 위원

- 규제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행동을 제약한다거나 또는 권장할 때 해당이 되는 것인데 임산부 배려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약이라기보다는 약간 권장성이라는 부분이고 이것은 규제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임,
-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하셨는데 3명 제출 인원 총 3명으로 했다는 것인지?

【 버스정책과 000 0000000000 】

- 그 기간 안에 이제 이걸 보시고 눌러주신 분이 세 분임.

○ 000 위원

- 국민 청원에 있어서 물론 공개도 했는데 불구하고 3명밖에 안 했다고는 하지만 3명 했다고 이렇게 국민 의견 수렴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
- 청원인이 어떤 행정적 용어를 정확히 알고 신청한 것은 아니기는 하나 그런 부분이 좀 보임.

○ 000 위원

- 이 청원과 관련하여 발표한 제도가 있는지?

【 버스정책과 000 0000000000 】

- 최근에 장애인 버스 요금을 지원해 주는 정책을 하고 있고 임산부에 대해서는 아마 교통비 지원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버스정책

과와는 관계 없음.

○ 000 위원

- 시행규칙 제2조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 버스정책과 000 000 】

- 규칙의 별표를 보면 교통약자용 좌석 부분이 있으며, 전체 좌석의 3분의 1 이상의 좌석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임산부에 대한 내용이 따로 나와 있지는 않음.

【 버스정책과 000 0000000000 】

- 시설에 대한 세부기준만 있으며, 임산부를 별도로 표기한 것은 임산부를 저희가 강조한 것임.

○ 000 위원

- 좌석을 핑크색으로 만든 근거가 없다는 말인지?

【 버스정책과 000 0000000000 】

- 그것은 기본적으로 교통약자라는 범주 내에서 특별하게 좀 더 임산부를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저희가 마킹을 하고 부착을 했던 것임.
- 교통 약자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그렇게 발표돼 있음, 교통약자란 생활 차원에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뜻하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항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는 총 한 250만 정도를 교통 약자로 보고 있으며, 임산부는 그때그때 수치적으로 틀린데 저희가 교통 약자로 분류하는 것은 총 250만인데 그중에 반 정도가 노약자분이시고, 장애인들이 또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음.

○ 000 위원

- 그럼 굳이 임산부만 따로 각 좌석별로 하나씩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는 법적인, 상위법이 없는 것인지?

【 버스정책과 000 0000000000 】

- 교통 약자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약자, 영유아를 동반하는 사람 그리고 또 이 교통 약자라는 부분이 법리적으로 들어가 보면 상대적 개념임. 저희가 이제 그런 민원을 많이 받는데, 나 지금 되게 힘들어. 내가 여기 왜 못 앉죠 이런 얘기를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었는데 교통 약자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도 힘이 약해서 내가 힘이 약하다면 그게 교통 약자가 되는 것임.
- 그 내에서는 그래서 그 사람이 앉을 수가 있는데 그게 교통 약자의 개념임. 교통 약자의 경우는 그렇게 상대적 개념으로 쓰였고 이 법에 있어서 또 교통약자로 쓰지 말고 장애인이다. 이렇게 해달라는 청원도 중앙부처에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음.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제한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교통약자라는 큰 범주에 쓰고, 상대적인 편의 부분, 모든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범용성이 중요하다고 해서 교통 약자라는 명칭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것임.

○ 000 위원

- 교통 약자에 대한 범위는 법에 정의되어 있으며 상대적 개념이 아님.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버스에는 없지만,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교통 좌석이 노약자석으로 이미 배정이 돼 있었음.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임산부도 이 개념에 적극적으로 포괄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임산부 배려석이 들어온 것으로 그에 따라서 인산부 배려석이 지하철마다 핑크색으로 다 표시되어 있는 그 부분임.
-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교통약자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규제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라고 해서 이 임산부 배려석에서 그때 논의

가 나왔을 때도 규제를 한다고 해야되었는데 규제 건은 아니다라고 의견이 끝난 부분임. 그러니까 교통 약자석에 대한 지정 비율은 있기때문에 지금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좌석에서 몇 퍼센트에 한해서 노약자석과 그다음에 핑크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는 것뿐임.

- 정원에 대해서는 좌석의 수는 정해져 있고, 교통 약자에 대한 정의도 되어 있으며, 이것이 규제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닌 것뿐임.

【 버스정책과 000 0000000000 】

- 맞음.

○ 000 위원

- 정원 좌석에 대해서는 규제가 되어 있지만, 거기에 앉은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거는 처벌할 수가 없다고 된 것 뿐임.

【 버스정책과 000 0000000000 】

- 오늘의 논의가 바로 그것임.

○ 000 위원

- 교통약자석에 앉은 사람을 제지하는 상위법률이 없는 것인지?

【 버스정책과 000 0000000000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기본이 되고, 시행 규칙이 있는데 공급자나 시설 운영자 이 부분에 대해서 벌칙 규정과 과태료가 있지 말씀하신대로 사용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없음.

○ 000 위원

- 12년 연말로 기억하는데 서울시가 최초로 지금의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 후 다른 시도로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했던 제도라는 측면에서 규제, 배려, 캠페인에 대해 선도

적 논의를 하는 것도 교통약자 배려제도에 대한 모범적 아젠다화라고 생각함.

- 청원인의 주장대로 규제를 하기에는 모범에 대한 근거가 취약함. 저희도 관련 근거가 없는 조건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방안을 찾기가 지난함. 그간 많은 사회단체에서 문제 제기가 되어왔으나 문제의 본질은 규제 근거의 취약성이므로 현재로서의 배려적 시민의식에 대한 캠페인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함.
- 교통행정을 서비스 개념으로 접근할 때 노약자에 대한 개념 정립이 지난함. 청원인의 문제 제기는 옳고 규제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 관련 법령을 재정비라는 것이 필요함.

【 청원 처리부서 직원 퇴장: 버스정책과 000 0000000000, 000 000, 도시철도과 000 000, 서울교통공사 000 00, 000 00 】

< 안건 심의 >

○ 000 위원

- 청원인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모범의 근거가 취약하기 때문에 캠페인과 사회적인 여론 조성을 통해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 마땅함.

< 의결 >

○ 000 위원장

- “의안번호 제2023-38호, 「임산부 배려석에 규제 도입」 청원의 조사 결과에 대한 청원처리 사항의 건”에 대해 처리부서의 검토의견에 동의하며, 원안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는지?

○ 위원 전원

- 없음.

○ 000 위원장

- 이의가 있는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하겠음.

(의사봉 3타)

2. 의안번호 제2023-39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개정」
청원의 조사 결과에 대한 청원처리 사항

< 안건상정 >

【 청원 처리부서 직원 입장: 관광정책과 000 000000, 000 000 】

○ 000 위원장

기피 관련 규정을 처리부서 직원에게 안내하였으며, 질의하여 기피하는 위원이 없음을 확인함.

- “의안번호 제2023-39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개정」 청원의 조사 결과에 대한 청원처리 사항” 을 상정함.

(의사봉 3타)

- 처리부서 직원은 청원서 내용과 청원 조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 자료 설명: 관광정책과 000 000000 】

< 질의 답변 >

○ 000 위원

-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지원의 개념에 이 청원인이

얘기하는 명동 바가지 논란에 대한 관광 특구 관리, 개입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 관광정책과 000 000000 】

- 바가지 요금 단속과의 관련은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음.

○ 000 위원

- 취지는 시장이 외국인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인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거나 복지를 주거나 그런 개념으로 쓴 것 같음.

【 관광정책과 000 000000 】

- 특구로 지정된 것이 6개 자치구 7개이며, 매년 평가를 통하여 보조금 지원을 하여 운영하고 있음.

- 상위법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의무를 적용하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으며, 그동안 지원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원인께서 어떤 내용을 보시고 청원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담당 실무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됨.

○ 000 위원

- 청원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지원금이 높아지면 상인들끼리 무리하게 바가지를 씌우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가 아닐지?

【 관광정책과 000 000000 】

- 지원금은 해당 기초자치단체를 통해서만 교부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으며, 나중에 집행 자금 정산 보고를 받기 때문에 상인한테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님.

- 시설 투자라든지 그 자치단체가 판단해서 상인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시설 개선을 해야된다하면 저희가 예산을 자치단체에 줘서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것임.

○ 000 위원

- 대법원 판결은 이 조례에서 이렇게 정한 게 기관 위임사무라는 의미로 추가하신 것인지?

【 관광정책과 000 000000 】

- 이것은 단체 위임 사무이며 상위법을 벗어나서는 조례상 제정할 수는 없음.

○ 000 위원

- 다른 조례에서 상위법령에서 위반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조례가 의외로 많으며,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별히 이렇게 법원까지 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개정을 할 수는 있으나 위법이라는 것은 사후적인 문제로 행정소송까지 갈 일이 얼마나 될 것이냐의 문제라 외국인들에 대한 보호를 좀 더 강화하자라는 논의 자체는 형량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음.

【 관광정책과 000 000000 】

- 만약 법조문에 지원 규정이나 근거가 없다고 그러면 말씀을 드리는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데 굳이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강행을 해야만 한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

○ 000 위원

- 청원인은 좀 규제와 페널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음. 예를 들어서 적극적인 관리 개입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지 마라 행동을 억제하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관광진흥 조례는 관광 진흥에 대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권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만약에 어떤 관련된 내용을 추가한다면 내용이 서로 상충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경제 질서 관련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나 소비자기본법 이것은 서울특별시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임.

【 관광정책과 000 000000 】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관광특구 진흥 계획이라는 게 있으며 해당 자치단체가 5년마다 기본 계획수립을 하게 돼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이게 다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저희가 평가를 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음.

○ 000 위원

- 만약 청원인이 바가지 논란 같은 그런 잘못된 행동에 대한 교정을 말씀해 주시는 거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보통 노점이나 이런 경우는 규제할 수 있는 어떤 규정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음.

【 관광정책과 000 000000 】

- 제가 알기로는 도로관리과가 소관 부서인데 명동의 경우 중구청의 거리 가게 운영 규정이 따로 있으며, 패널티는 벌칙상으로 명시 되어 있음.

○ 000 위원

- 그러면 차라리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나을 것이며, 관광정책과에서 조례 개정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임.
- 검토 의견에도 상위법을 논하지 않고, 조례 개정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맞을 것임.
- 상위법 위배 관련은 행정법상 규칙이므로 맞지만, 아래 내용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가 해야될 일이지 서울특별시가 해야될 것이 아님

【 관광정책과 000 000000 】

- 저희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했다면 청원인에게 안내를 다시 드

렸을 것임.

○ 000 위원

- 청원 내용에 보시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이른바 명동 바가지 논란을 보고 관광 특구에 대한 관리 개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통제해달라는 의미로 보임.

【 관광정책과 000 000000 】

- 제가 알기로는 중구청에서는 명동 바가지 관련해서 지금 7 ~ 8월 두 달에 걸쳐서 계속 야간 단속을 해왔으며, 단속을 하고 있고 연말까지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000 위원

- 가격도 단속을 하고 있는지?

【 관광정책과 000 000000 】

- 거리 가게(노점상) 가격 표시는 법정의무 규정은 아니나, 중구청장이 가격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거리가게 운영규정’을 개정 추진 중임

○ 000 위원장

- 검토 의견 마지막 문장 관련하여 바가지 물가를 관리하고 오늘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처럼 법률이나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청원을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할 것이 아니라 현재 단속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야 될 것임.

【 청원 처리부서 직원 퇴장: 관광정책과 000 000000, 000 000 】

<안건 심의>

○ 000 위원장

- 검토의견 중 경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

는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의결>

○ 000 위원장

- “의안번호 제2023-39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개정」 청원의 조사 결과에 대한 청원처리 사항의 건”에 대해 처리부서의 검토의견에 동의하며, 원안동의하고자 함. 다만, 검토의견 중 경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는지?

○ 위원 전원

- 없음.

○ 000 위원장

- 이의가 있는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하겠음.

(의사봉 3타)

3. 의안번호 제2023-40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 정상화」 청원의 조사 결과에 대한 청원처리 사항

<안건상정 >

【 청원 처리부서 직원 입장: 복지정책과 000 000 】

○ 000 위원장

기피 관련 규정을 처리부서 직원에게 안내하였으며, 질의하여 기피하는 위원이 없음을 확인함.

- “의안번호 제2023-40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 정상화」 청원의 조사 결과에 대한 청원처리 사항”을 상정함.

(의사봉 3타)

- 처리부서 직원은 청원서 내용과 청원 조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설명: 복지정책과 000 000 】

<질의 답변>

○ 000 위원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임명 절차는 따로 정해져 있는지?

【 복지정책과 000 000 】

- 사회서비스원 운영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고 서울시 출연 기관이기도 함.
- 일반적으로는 임원 추천위원회 주관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선출이 되고 임원 추천위원회가 추천을 하면 최종적으로 임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000 위원장

- 사회서비스원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 복지정책과 000 000 】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을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현재는 종합재가센터와 국공립 어린이집,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종합재가센터는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인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데이케어센터는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000 위원장

-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복지정책과 000 000 】

-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데이케어센터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민간 위탁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형태가 되고, 다른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은 서울시 출연 재원을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고 일부 장기요양보험 운영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수가 수입이 있으며, 그 수입과 서울시 출연금을 합쳐서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고 있음.

○ 000 위원

- 청원인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어린이집 학부모 대표도 있는데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게 된 경위나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에 관하여 본래 본인들이 향유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에 대해서 회복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인지, 이 어린이집은 2천 명이나 서명을 받아오셨는데 어떤 경제적 목적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데에 대해서 파악하였는지?

【 복지정책과 000 000 】

- 요청 내용이 특별히 경제적인 목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며, 청원인의 요지는 어린이집 수탁 운영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할 때, 보다 좋은 아이 돌봄이 가능할 것 같다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 같음.
- 한편으로는 이게 국공립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의 일정한 운영 기준들이 있으며 실제로 각 자치구에서 관리 감독을 받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해당 어린이집의 돌봄 품질이 달라진다고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준과 정책 제도에 따라서 이 돌봄의 품질은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000 위원

- 청원 내용 중 일방적 복지 후퇴를 즉각 중단하고 하는 부분이 7개 어린이집이랑 데이케어센터 수탁 해지하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그렇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는지?

- 검토 의견을 보면 우리는 이런 공공돌봄을 할 것으로만 되어 있고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이쪽 문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쪽에 대한 해명은 별로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 그게 불가능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 복지정책과 000 000 】

- 개최 요구서에는 좀 핵심적인 내용만 담으려고 진행을 했으며, 동일한 내용으로 그동안 서울시 응답소, 시민 참여 경로, 민원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계속 받고 있으며, 그 경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최대한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음.

○ 000 위원

- 예산 100억 삭감된 내역을 첨부 안 하셨는데, 예산이 100억 삭감됐지만 수입 지출 현황과 예비비 42억 현황을 고려할 때 기관 운영상의 문제는 없다고 표현하셨는데 이 표현은 예산 삭감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저희한테 보여주실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싶음.

【 복지정책과 000 000 】

- 서울시가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안을 서울시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100억 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 의회가 어떤 세부내역을 가지고 100억 원을 삭감했는지는 시에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담겼다고 보시면 됨.

○ 000 위원

- 시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삭감된 내용들이 있을 것임, 지금 핵심적으로 청원인은 100억 계산을 하고 원상회복하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그것과 관련하여 연동되는 것임. 일반적 복지 혜택을 중단하고 공공돌봄을 정상화하라는 말임.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자체가 돌봄 서비스가 핵심이지 않은

지? 오지 못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라는 말임. 이것은 기본적으로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지적이 나왔던 것이 원래 복지는 고비용 저효율임. 서울시 행정감사에서 고비용 저효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계속 논쟁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100억 삭감되어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어쨌든 청원인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복지 후퇴는 없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자료도 좀 있었으면 어떨까 싶음.
- 서울특별시 입장에서 보기에 어떤 부분에서도 맹점이 되고 문제 있는 부분인지 알겠는데 혁신계획과 운영방향에 대해 지속적인 소통 및 설득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설득 및 소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으니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청원인과 소통 및 설득이 될지 이해가 잘 안됨.

【 복지정책과 000 000 】

- 저도 2023년 하반기부터 이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정을 이제 세세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작년 예산 심의 직후에는 100억 원이 삭감되면서 기관 존립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냐 하는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함.
- 하지만 현재 재정 상황을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가 42억 원이 남아 있어 그 부분을 이제 활용할 경우에 올해 운영할 수 있는 비용 특히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비용의 대부분은 직원들 인건비로, 연간 인건비가 약 150억 원 이상 들어가고 있는데 그 예비비를 활용해서 현재는 올해의 예산 상황에는 문제가 없고 직원들의 인건비 지급에도 문제는 없는 상태이고 그에 따라서 현재는 정상 운영되고 있는 상태인 것임,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잘 설명 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음.

○ 000 위원

- 대부분 인건비인데 말씀하신 예비비는 남아 있으며, 올해는 버틸 수 있다는 내용이 마찬가지로 아닌지? 내년도 예산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보면 이제 월급에 대한 문제가 아닌지?

○ 000 위원장

- 청원서를 낸 분들이 약 한 2400명 가까이 되는데 처리 부서에서 이 청원을 답변했을 때 그분들에게 충분한 설득과 납득시킬 만한 것이 되느냐 이것임.
- 올해는 예비비를 해서 버틴다 해도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임. 예산이 또 삭감되어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불안정한 조직 운영이 예상되는데 임시방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임. 지적받은 것을 보면 자립 노력을 안 했다는데 재정적인 자립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고 안 했다고 보는 건지, 그렇다면 수가를 좀 더 높여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것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100억 삭감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얼마씩 해서 총 100억원이 삭감됐는지 이것이 첨부됐으면 이해가 쉬웠다는 얘기임.

○ 000 위원

- 대표이사 사임 이유는 무엇인지? 임기 만료인지?

【 복지정책과 000 000 】

- 임기 만료는 아니고 개인 사유로 사임 의사를 밝혔음.

○ 000 위원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발족 취지는 동의하지만, 관련자료를 보니 구성원들의 운영상의 난맥상이 있다라는 것이 감사 결과로 밝혀졌으니 효율적 운영방안을 먼저 제시하고 민간과의 차별성에 대해서 혁신

능력을 보이겠다는 내용을 제시하면 좋겠음. 더 나아가서 민간은 이렇게 수요를 감당 못하는데 서비스원이 발족 이후에 이 정도 수요를 수용을 했다라든가 이런 구체적 근거자료들을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음. 예산 삭감이 결국 구조 조정과 인건비 감축에 대한 고민으로만 귀결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보여짐.

- 돌봄 노동의 가치는 매우 중요함. 다만 감사결과에 따른 서비스원의 혁신노력과 예산 삭감의 문제점이 함께 논의되길 희망함.
- 따라서 인건비 문제만을 가지고 예산 삭감을 이슈화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려우며, 자정 능력을 보여줘야 함. 그렇다면 예산 삭감에 대해서 충분히 서비스원의 설립 취지와 공적 기능을 지지하기에 청원인들의 의견에 지지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임.

○ 000 위원장

- 청원의 요지가 100억 삭감된 예산에 대한 원상회복 그리고 전문가를 대표로 하여 정상화해 달라는 것이라면 이것에 대한 답을 해야함. 100억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정 노력을 통해서라도 그 예산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채우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좀 전의 위원님 말씀처럼 100억이 삭감됐더라도 할 수 있는 자정 노력을 통해 구조조정이든 경영 혁신이든 함으로 예산이 삭감되었어도 우리가 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야 되고 두 번째로 정상화는 조만간에 대표 모집 중에 있고 공개 절차 중에 있으니 곧 정상화될 것이라는 이런 답변이 나와야 하는 것인데, 외부에서 어떤 지적을 받았는지 하는 것이 왜 들어가야 하는지, 청원 답변에 대한 검토는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될 것임.

○ 000 위원

- 이 문제들을 가지고 마치 공익성이 후퇴하는 것처럼 비취지면 안 됨, 공익성은 유지하되 공익적 효율성을 어떻게 스스로 각 조직들이 담

보할 것인가가 혁신의 논점이 되어야 함.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수요 예측도 아쉬운 부분이 있음. 코로나 시기와 지금은 사정이 다름.

【 복지정책과 000 000 】

- 청원 심의에 대비하여 검토 의견 중심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좀 더 이제 상세하고 친절한 내용들을 많이 담지는 못했던 것 같아 답변 과정에서 그 부분들을 보완하겠음.
- 현재 진행하는 과정들을 보면 저희 지도 감독 부서에서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정상적인 운영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취지 자체가 기존의 민간 제공 기관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 어려워하는 부분들 그로 인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고품질의 공공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던 만큼 틈새 돌봄이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청원인들께 이제 충실히 설명할 수 있도록 답변을 작성하겠음.

○ 000 위원

-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것임, 고용자분들이 있고 그분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받는 계층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니즈는 다름. 공동 대표나 학부모 대표 부분이 전혀 다름. 후자 같은 경우에는 받았던 서비스를 우리가 못 받는다고라고 하면 그분들은 이제 버튼이 눌리는 것이고 전반부에 계신 분들은 그럼 우리가 고용이 안 된다고 하면 그분들은 또 버튼이 눌리니까 다르다는 거는 아마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 좀 생각하셔서 하시면 어떨까 싶음.

【 청원 처리부서 직원 퇴장: 복지정책과 000 000 】

<안건 심의>

○ 000 위원장

- 내용을 수정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조건부 동의하고자 함.

〈의결〉

○ 000 위원장

- “의안번호 제2023-40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 정상화」 청원의 조사 결과에 대한 청원처리 사항의 건”에 대해 청원인의 청원 취지에 맞춰 검토 의견을 전체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으로 조건부동의하는 내용으로 조건부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는지?

○ 위원 전원

- 없음.

○ 000 위원장

- 이의가 있는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안건은 조건부가결 하겠음.
(의사봉 3타)

[폐회]

○ 000 위원장

- 이상으로 2023년 제14차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를 마치도록 하겠음.
(의사봉 3타)